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, 수탁관리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
- 사용료 반환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, 일부내용 중 맞춤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한 자구를 수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 사유 및 수탁 대상 수정 (안 제5조제1항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손해보험 의무가입 조항 삭제(안 제8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 명시(안 제16조제2항)
- 사용료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8조제2항)
 - (1) “월 사용료” → “총 사용료”
 - (2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할 때 :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
-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맞춤법 등 수정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(1) 「민법」
- (2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(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

5. 검토의견

○ 본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, 개정된 사항 반영으로,
-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토록 하고, 수탁관리자의 손해 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
-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